

2024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

1

창업학점제란

- ‘창업학점제’란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고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‘창업현장실습’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수강생들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창업학점제 신청자 중 ‘창업교육운영위원회’에서 신청자격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

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안내

- 운영시기: 정규학기(1학기, 2학기)
- 창업학점제 취득학점

이수가능 학점	학사	석사	박사	석박통합
한 학기	6학점	3학점	6학점	6학점
재학 중	9학점	3학점	6학점	9학점

※ 현재 학사과정만 교과목이 개설되어 대학원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임

- 창업현장실습 교과목

교과목명	이수구분	이수시간	인정학점	비고
창업현장실습 1	일반선택	6주(240시간)이상 12주(480시간)미만	3학점	반복이수 가능(2회)
창업현장실습 2	일반선택	12주(480시간)이상	6학점	

- 이수시간은 해당 학기 중 창업활동 최소 시간으로 기준 범위에서 창업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 - 창업현장실습1, 2는 공과대학 학사과정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되며, 신청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학칙 제80조(과정간 학점취득 인정)에 따라 본인의 취득 가능 학점을 사전에 소속 학과(부)·전공에 확인하여야 하며,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※ 대학원과정 학생 → 학사과정 교과목 학점취득 인정학점: 석·박사과정 중 최대 6학점

○ 신청자격

- 해당 학기 등록하고,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-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

※ 창업 관련 교과목

창업, 벤처, 특허, 지식재산권, 바이오, 로봇, AI, 테크 등 창업과 사업화 기술 개발·고도화를 위해 수강한 교과목으로 창업학점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
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(공동대표를 포함한다)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
- 단, 다음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

1. 금융 및 보험업. 다만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.
 2. 부동산업. 다만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.
 3. 숙박 및 음식점업. 다만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.
 4.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
 5.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 6. 그 밖에 학생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
- * 비고 :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

○ 성적평가: 급락제(S/U)

-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“U”를 부여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“S”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3

운영 절차 및 일정 안내

구분	내용
신청	• 신청자 자격 확인 •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- 창업현장실습 신청서, 수행계획서(붙임서식) - 성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(또는 등기부등본), 개인정보동의서, 기업소개자료(자유양식) 등

구분	내용
	★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승인 및 학과장(전공주임) 확인서 제출(붙임서식) • 창업지원단 홈페이지(https://startup.snu.ac.kr)를 통해 제출 - 신청기간: 2023. 12. 27.(수) ~ 2024. 1. 10.(수)
선발	• 신청서류 검토 및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• 선발 여부 안내 ※ 미선발자는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
수강신청	•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절차에 '창업현장실습' 신청 - 수강신청 기간: 2024. 1. 30.(화) ~ 2024. 2. 6.(화) 예정 ※ 수강신청 교과목 별도 안내
학기 중 창업활동	• 학기 중 창업활동(신청 교과목 이수시간 이행) • 창업지원단에서 과목책임교수 지정 • 월별보고서, 결과보고서(붙임서식)를 과목책임교수에게 제출 • 학기 중 최소 4회의 창업현장실습 지도 및 현장점검 1회 실시 ★ 학생은 학기 중 실습지도 및 현장점검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. 응하지 않을 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학점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향후 추가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위원회 심의 (학점인정)	• 창업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도·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위원회에서 성적 평가(S/U) 및 학점인정 여부 심의 ※ 전공인정 여부는 소속 대학원(학과,전공) 내규에 따름

4

유의사항

- 신청자는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, 월별보고서 등의 신청서류 작성 시 교과목당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주별 창업활동 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신청내용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수강생을 선발하므로 선발되지 않거나 신청 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 및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지도·점검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학점 취득이 불가하며, 향후 창업현장실습 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5

접수 및 문의

- 접수기한: 2023. 12. 27.(수) ~ 2024. 1. 10.(수)
- 접수방법: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(<https://startup.snu.ac.kr>)를 통하여
신청서류 제출
 - ※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
- 문의: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(☎02-880-8985)

- 붙임 1. 「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」 1부.
2. 신청서류 1부. 끝.